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11. 13.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른 조례정비

○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위촉 인원 및 지역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구광역시 내 개업 변호사로 한정한 지역 제한 및 인원제한 규정 개정(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 방식, 위촉 제한, 임기 및 위촉 해제, 정보공개 근거 마련(안 제2조, 제4조, 제8조)

○ 변호사 사건 수임료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변호사법 제9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 법 예 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5. ~ 10. 2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 제 심 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

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구분 / 소송별	지급기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기 타
행정 및 민사소송	1.신청사건 · 단순신청 본안관련 신청 · 변론있는 신청	 1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없 음	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다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3급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기타경비 : 실액
	2.본안사건 (소송물가액기준)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 이상	 300,000원 이내 400,000원 이내 600,000원 이내 1,2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2,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상고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4.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따라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연번	구분 / 사건	문의내용	회시내용	문의 및 회시 년 월 일	비고

관 계 법 령

변호사법 제90조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전문개정 2008. 3. 28.]